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노아파트너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고 한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8 조(수수료)에 의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관련 법규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일임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업무에 따른 구분

① 일임수수료: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2) 1)의 수수료는 운용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성과수수료: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투자자문 또는 일임운용 만기, 중도해지시 사전에 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에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투자자 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중도해지수수료: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회사는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각 투자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계약의 특성, 운용자산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객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별지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제 5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1)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2)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 경과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6 조 (계약의 중도해지시 부과절차)

(1)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2)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제 3 조 2 항에 의거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제 7 조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한다.

(2)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하고 확인한 고객이 서명한 서면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할 때에 투자일임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시 등)

(1) 회사는 법 제 58 조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 다.

(2) 회사는 법 제 58 조제 3 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 조(투자광고)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투자광고) 제 1 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별지 >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1.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 체계

구분	기준수익율	성과수수료율	비고
성과수수료	연 6%	기준수익율 초과금액의 25%	기준수익율은 연율 적용

* 성과수수료 산정의 기준지표는 연 6%의 절대수익 달성임

□ 성과수수료 산정

(1)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는 중도해지나 만기 시 총수익이 기준수익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총수익의 산정

계약금액=최초계약금액+증액금액-감액금액

총수익=해당일 평가금액-계약금액

나. 기준수익의 산정

계약금액평잔=(해당기간 동안 일별 계약금액의 총합)/운용일수

기준수익=계약금액평잔*기준수익률*운용일수/365

다. 성과수수료의 산정

초과수익=총수익-기준수익

성과수수료=초과수익*성과수수료율

(2) 중도해지수수료: 투자자는 계약기간 내 요청에 의해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 중도해지수수료의 산정

중도해지수수료=성과수수료*1/2

(3) 투자실적의 평가

가. 투자실적(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평가금액 대비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의 증감률로 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나.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직전 영업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마. 예상배당금이 실제배당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시에는 운용성과를 재평가하여 환급 또는 추가 청구합니다.